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고 제2026-6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원의 조례 등에 대한 제·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 필요성 증가에 따라 법률고문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임기 만료 시에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종료시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나. 법률고문의 명칭 변경(안 제1조 ~ 안 제8조)

다.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라. 수임의 연속성 확보 및 고문료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마. 별지 법률고문 명칭 수정(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3. 입법예고기간: 2026. 11. 11. ~ 2026. 11. 17.(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